

知的所有權保護를 위한

國際機構 및 條約의 紙上探訪

- …… 知的所有權 保護를 위한 國際機構 및 條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가장 基……○
- …… 碩的인 質問같지만 선뜻 體系的 對答을 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이……○
- …… 를 機構 및 條約과 접할 機會가 적었기 때문이다.……………○
- …… 그러나 知的所有權의 國際化時代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이들 機構 및 條約을……○
- …… 모르고는 知的所有權의 保護를 期待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本誌는 紙上探訪을 마……○
- ……련, 이들 機構 및 條約을 紹介하기로 했다. ………………<金 亭 異 記>……○

◎ 第 1 回 ◎

■ 이달의 目次 ■

- 起源
- 主要目的
- 爬하 同盟 또는 條約
- 國際聯合과의 關係
- 加入國 現況
- 國際事務局

<다음號에 繼續>

WIPO는 1974年 12月에 UN의 전문기관의 하나가 되었다.

■ 主要目的

▲WIPO의 主要 目的是 다음과 같다.

(i) 기타 다른 國際的 機關들과의 協助를 바탕으로 加入國間의 協力を 통하여 全世界를 총망라해서 知的所有權의 保護 장려.

(ii) 知的所有權 關聯 同盟間의 行政協力 增進

▲知的所有權은 發明, 商標 및 意匠등의 보호를 위한 工業所有權과 文學, 音樂, 美術, 寫眞 및 映畫등의 著作物의 保護를 위한 著作權의 두가지 주요 갈래로 区分된다.

▲全世界를 총망라해서 知的所有權의 保護장려와 關聯하여 WIPO는 새로운 國際條約의 체결과 各國 法令의 現代화를 장려하며, 開發途上國들에게는 技術支援을 제공하며, 工業所有權의 保護를 원하는 몇몇 國家들을 위해서는 發明·商標 및 意匠을 保護하기 위해 必要한 施設支援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會員國間의 行政協力を 증진시키고 있다.

▲關聯 同盟間의 行政協力에 관해서 WIPO는 제네바에 있는 國際事務局에서 각 同盟의 行政을 통합하고 있으며 事務局간에 각 機關을 통하여 行政을 감독한다. 또한 行政의 일원화를 통하여 會員國 및 知的所有權과 關聯한 民間部門活動의 경비절감에 이바지하고 있다.

(著作權 및 隣接權에 있어서 世界著作權協約이 유네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1)

■ 起源

世界知的所有權機構*는 1967年 7月 14일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조인된 協約에 의하여 設立되었는데 그 協約은 “世界知的所有權機構 設立協約”이라 命名되었으며 1970年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現 WIPO의 기원을 살펴보면 工業所有權의 保護를 위한 파리條約(1883年)과 著作物의 保護를 위한 베른條約이 채택된 때부터라 할 수 있다.

앞서의 두가지 條約 모두 國際的 官廳이나 事務局의 設立을 規定하고 있었다. 결국 1893년에 연합체를 구성하여 知的所有權 保護를 위한 國際聯合(United International Bureaux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佛語式 略稱으로는 “BIRPI”로 알려짐) 등의 여러가지 명칭으로 기능을 수행하였다.

* WIPO(英語),OMPI(佛語 및 스페인어) 및 BONC(러시아어)등으로 略稱

스코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隣接權에 관한 로마協約의 行政이 유네스코 및 국제노동기구(I.L.O)와의 協力下에 WIPO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므로 行政의 완전한 일원화를 달성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約」등이다.

■ 산하 同盟 또는 條約(設立年代順으로)

工業所有權 關聯

- i) 파리 同盟(工業所有權의 保護를 위한)
- ii) 마드리드 協約(商品出處의 虛偽表示禁止를 위한)
- iii) 마드리드 同盟(國際 標章登錄에 관한)
- iv) 헤이그 同盟(意匠의 國際奇託에 관한)
- v) 나이스 同盟(標章登錄을 위한 商品 및 서비스의 國際分類에 관한)
- vi) 리스본 同盟(原產地 表示 및 그 國際登錄의 保護를 위한)
- vii) 로카르노 同盟(意匠의 國際分類設定)
- viii) IPC 同盟(全世界 特許分類의 統一性 確立을 위한)
- ix) PCT 同盟(數個國에서 保護 받고자 하는 發明에 대하여 國際出願・조사 및 심사에 있어서는 協力を 위한 特許協力條約)
- x) TRT 同盟(數個國에서 保護를 받고자 하는 商標登錄의 國際出願을 위한 商標登錄條約)
- xi) 부다페스트 同盟(特許節次를 위한 微生物奇託의 國際的 設定을 위한)
- xii) 나이로비 條約(올림픽 標章 保護에 관한)

著作權 또는 인접권 關聯

- i) 베른 同盟(文學 및 예술著作物의 保護에 관한)
- ii) 로마 協約(레코오드 및 방송의 제작자 및 연주의 보호를 위한)
- iii) 제네바 协約(레코오드의 무단복제에 대항하여 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 iv) 브루셀 協約(인공위성에 의해 전송되는 정보의 분배에 관한)
- v) UPOV(新種植物의 保護를 위한)

한편 멀지 않은 장래에 다음 네개의 條約들이 發効되고 그들 역시 WIPO에서 관리하게 될 것이다. 이 네 가지 條約은 標章의 形象要素 國際分類의 設定과 活字體 및 그들의 國際奇託 保護를 위한 두가지의 「비엔나 協定」, 科學的 發見의 國際登錄에 관한 「제네바條約」 및 저작권 로얄티의 이중파세에 관한 「마드리드 多國間 協

■ 國제연합과의 관계

WIPO가 UN의 專門機關으로 존속하는 限 UN과의 協定 第1條에 나타나 있듯이, WIPO는 協定書 및 WIPO 관할하에 있는 條約 및 協定에 따라 적절한 활동을 수행할 책임을 진다. 그 중에서도 UN 및 그 조직, 그리고 UN 시스템내의 기타 기관들의 능력범주 내에서 창조성 있는 知的活動을 장려하며, 개발도상국들에 있어서 經濟, 社會 및 文化開發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工業所有權과 關聯한 技術移轉 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開發途上國을 위한 그러한 活動을 計劃하고 實行함에 있어서 WIPO는 國內의 創造活動을 격려하고 外國의 技術과 文學・예술작품의 外國著作物의 獨創을 용이하게 하고, 각종 特許文獻에 포함된 科學 및 技術情報와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球化하기 위하여 知的所有權을 最大한 使用토록하는데 특히 유념하면서 國제 開發協力의 關聯 목적취지를 따르고 있다.

■ 加入國 現況

- WIPO 設立協約이 1967年 7月 14日 조인되고 1970年에 發効된 이후 그 加入國은 1970年 4月 26日 스위스 영국등 13個國이 최초 加入한 이래 지난 2月 18일 시에라 리온이 加入함으로써 113個國에 달하고 있다.

- WIPO의 會員資格으로서는 파리 同盟 또는 베른 同盟의 加盟國이거나 非加盟國이라 할 지라도 다음 條件中의 하나를 만족하는 國家는 加盟國이 될 수 있다.

- i) 國際聯合 또는 國제연합과 제휴관계에 있는 專門機關이나 國際原子力機關의 加盟國
- ii) 國際司法裁判所規程의 當事國
- iii) WIPO 總會에서 WIPO協約 當事國으로 초청된 國家(WIPO 設立協約 第5條)

- 1986년 8月 現在 WIPO의 加盟國은 알제리・앙골라・아르헨티나・호주・오스트리아・바하마・방글라데시・바베도스・벨기애・베니・브라질・불가리아・부르키나파소・브룬디・백러시아・카메룬・카나다・중앙아프리카・차드・칠레・중공・콜럼비아・콩고・코스타리카・아이보리코스트・쿠바・키프러스・체코슬로바키아・北韓・덴마크・이집트・엘살바도르・파지・핀란드・프랑스・가봉・감비아・西獨・東獨・가나・그리이스・구아テ말라・기니아・아이티・바티칸・온두라스・헝가리・India・인도네시아・이라크・아일랜드・이스라엘・

이탈리아·자마이카·日本·요르단·케냐·리비아·리히텐시타인·룩셈부르크·말라위·말리·말타·모리타니아·모리셔스·멕시코·모나코·몽고·모로코·네덜란드·뉴질랜드·니카라과·니제르·노르웨이·파키스탄·파나마·페루·필리핀·폴란드·포르투칼·카타르·韓國·루마니아·루안다·사우디아라비아·남아프리카·세네갈·시에라리온·소말리아·소련·스페인·스리랑카·수단·수리남·스웨덴·스위스·토고·튜니지아·티아키·우간다·우크라이나·아랍에미레이트·英國·탄자니아·美國·우르파이·베네수엘라·베트남·예멘·유고·자이레·잠비아·짐바베등이다.

一加盟國이 되려고 하는國家는 WIPO事務總長에게加入書를寄託하여야 한다. 파리協約 또는 베른協約의當事國들은 최소한 파리協約 스톡홀름法(1967), 또는 베른協約의 스톡홀름法(1967)·파리(1971)法의施行細則을 이미 적용하거나 비준하였거나加入한 후에라야 WIPO의加盟國이 될 수 있다.

■ 國際事務局

▲ 組織

International Bureau(國際事務局)는 WIPO, 파리協約 및 베른協約에 의해 체결된同盟, 파리協約의專門 또는 補助同盟 즉 PCT, 마드리드協定, TRT, 리스본協定 헤이그協定, IPC協定, 나이스協定 및 로카르노協定에 의해 체결된同盟의事務局이다.

國際事務局은 WIPO에 관해서는總會 또는會議로서, 파리, 베른 및 기타 同盟에 관하여는各 同盟의總會로서 운영 관리된다. 파리協約 및 베른協約은 그들會員國들 가운데서 집행위원회를 선출하고 이 두개위원회를 연계하여 WIPO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國際事務局은事務總長이 관장하며 1985년 5月現在 영구직원이 약 270名에 이르고 있다.

▲ 機能

WIPO의事務局인 International Bureau(國際事務局)은 다음의 5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첫 번째의 기능은 WIPO 및各 同盟들의 몇개의 집행기구들의事務局으로서의 역할이다. 이와 같은 역할로서 보고서 및 文獻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들 집행기구들의會議를 준비한다. 會議自體는 집행기구에서 개최하며, 會議後에는 그會議의 結定事項이 國際事務局에 관련된 것일 때에는 모든 關聯國들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결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로 WIPO 및諸同盟의 소관 집행기구와의 접촉과 지도를 받으므로써 知的所有權分野에서各加盟國들 사이의 國際協力を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기존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셋째로 知的所有權의 保護와 관계되는 다양한 종류의情報를 수집한다. 이를 情報의 일부는各會員國의要請으로 직접 제공하기도 하며, 대부분의情報은 취합하여 월간으로는 英文版과 佛文版으로 발간하는 Industrial property(La Propriété industrielle)와 Copyright(Le Droit d'auteur)의 두 가지로, 뉴스레터로는 아랍어, 영어, 불어, 포르투칼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版으로 수시로 發刊하고 있다. 이를 刊行物은 WIPO 및諸同盟의加盟國에 관한情報와 國際會議,各國法令의 变경사항, 國際事務局의事業, 知的所有權의理論과 實際的適用에 관한記事 및 서적소개등의情報를 포함하고 있다.

넷째로 WIPO에 의해 관리되는諸般條約의原本寄託所로서의 역할이다. 이를條約의 증명사본은 要請에 의해 國際事務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다섯째로 特許, 商標, 意匠 및 原產地表示等의 國際登録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國際事務局은 PCT出願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i) 條約(PCT)에 의거한 國際出願의原本을保管
ii) 國際出願의 公報發行
iii) 每月 둘째주에 PCT Gazette(英文版 및 佛文版)을 發刊하며 加除式의 「PCT出願人案內」(英文版, 佛文版, 獨文版 및 日文版)을 發刊한다.

iv) 國際出願을 접수한 國내官廳, 出願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指定官廳, 國際調查 및 國際豫備審查를擔當하는 國際機關等과 國際出願을 한 出願人과의 접촉을 가능케 하고 있음.

v) 마지막으로 國際事務局은 앞서 말한 官廳 및 國際機關間의 効果의in 協約과 조정을 위한 이들 政府間委員會의 會合을 준비한다.

1978年 6月 1日以來로 1984年 5月 1日까지 26,000件以上的 國際特許出願이 접수 및 처리되었다.

2) 國際商標登録業務(The Service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Trademarks)는 1893年 1月 1日부터 계속해오고 있다. 1984年 5月 1日까지 約 534,000件의 新規 및 更新登録이 이業務의 연관되어 이루어졌다. 1983年 한해동안 約 12,928件의 國際登録 및 更新이 있었다. 國際事務局은 이業務의 일환으로 「Les Marques internationales」을 月刊으로 發행

하며, 新規 登錄商標, 更新登錄商標 및 讓渡·無效 및 指定商品과 指定서비스의 制限 等 기준 登錄에 있어서 的 變更事項 등에 관한 情報가 수록된다. 要請에 의하여 國際登錄簿의 초록을 제공하며 또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서 國際標章間의 사전 檢索 業務도 수행하고 있다.

3) 國際意匠寄託業務(The Service for the International Deposit of Industrial Designs)는 1928年 6月 1日 以後로 계속되었으며 1984年 5月 1日까지 77,000件以上이 寄託되었다. 1983年 한해동안의 國際寄託件數는 2,044件이었다. 어떤意匠이同一한基本思想에 바탕을 둔 몇 가지 변형이 있을 때에 한해서 몇 개의意匠을 한번의寄託으로 할 수 있게 허용한 이후로寄託된意匠件數는寄託件數의 몇 배에 달하고 있다.

新規 登錄과 기존 登錄에 있어서의 演變 사항 全體가 수록된 "International Designs Bulletin/Bulletin des dessins et modèles internationaux"를 每月 發刊하고 있다.

4) 原產地表示의 國際登錄業務(The Service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Appellations of Origin)는 1966年 9月 25日 이래로 계속되어 왔으며, 1984年 5月 1日까지 約 700여件이 登錄되었다.

新規 登錄이 發效될 때마다 "Les Appellations d'origine"誌를 發行한다.

▲ 財 源

國際事務局 正規豫算의 主要財源은 加盟國으로부

* UNDP :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約稱(國際聯合開發計劃)

(案) 本會 發明振興事業 (内)

本會는 發明振興事業을 積極 推進하여 登錄된 權利가 企業化 될으로써 技術革新을 바탕으로 國家產業發展에 寄與하고자 다음과 같은 事業을 展開하고 있으니 많은 參與바랍니다.

- 發明獎勵館의 發明品無料展示 및 企業化 幹旋
- 優秀發明試作品製作支援
- 優秀發明者, 發明有功者, 優秀特許管理企業 選定表彰
- 海外展示出品의 積極 支援
- 海外出願에 對한 補助金 支援
- 優秀發明의 金融支援推薦
- 創業資金支援 推薦(45歲未滿)
- 發明의 保護 및 紛爭仲裁
- 發明特許品流通販賣展示會 開催
- 企業과 發明家 結緣 (申請接受)
- 姓名 및 住民登錄番號
- 公告, 登錄番號 및 日字
- 企業화資金 投·融資 推薦
- 住所 및 電話番號
- 發明考案의 명칭을 적어 보낼 것.

※ 기타 자세한 것은 本會 發明振興部(557-1077~8)로 문의 바랍니다.